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2월 13일, 부승찬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5년 2월 14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9.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8차 국방위원회(2025.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부승찬의원)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은 현재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군 복무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국방자격의 하나로 운영 중이나, 「군인사법」 제2조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역 군인이 아닌 사람도 자격검정에 응시하고 있는 현 실태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제처도 2018년 6월 군인이 아닌 자도 응시하는 자격시험은 「군인사법」에 규정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국방사업관리자 자격증의 근거 규정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자격 취지를 고려하여 자격증의 명칭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서덕교)

- 개정안은 국방사업관리사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 근거 법률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꾸어 현역 군인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동 자격증 검정시험에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함.
- 명칭 변경도 현행 국방사업관리사는 ‘국방사업’이라는 광범위한 표현으로 국가전문자격증으로서의 구체적 표현이 미흡한 측면이 있고, 실제 시험과목 내용은 ‘방위사업’ 위주로 편성되고 있으며, 동 자격증이 방위사업 및 유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

절합.¹⁾

- 다만, 다음의 수정 논의가 필요함.

첫째, 개정안 제14조제1항제3호에서는 ‘방위사업관리사 자격증 운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히 자격증 운영으로만 오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방위사업관리사 자격 관리·운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현행 국방사업관리사제도와 다르게 개정안에서는 방위사업관리사 제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위사업관리사 제도의 취지나 업무내용의 대강을 추가함으로써 동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방위사업법」 13조를 참조하여 ‘방위력개선 및 전력운영·유지 등 사업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위사업관리사 자격 관리·운영’으로 수정이 필요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률안심사소위원장 부승찬)

방위사업관리사 자격·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